

라. 어려운 법률용어인 ‘기승(騎乘)’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‘타고 있는’, ‘출주(出走)’를 ‘출전’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(법률 제17101호, '20.3.24)에 따라, ‘기승(騎乘)’을 ‘타고 있는’, ‘출주(出走)’를 ‘출전’으로 개정코자 함(안 제4조·제5조·제9조 개정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축산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
개정안	수정안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법령안 담당자 [winstaks@korea.kr](mailto:winstaks@korea.kr)

2) 우편 : (우 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5동,  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

3) 팩스 : 044-868-3966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(전화 044-201-2352, 23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[www.mafra.go.kr](http://www.mafra.go.kr)) <국민소통 - 법령정보 - 입법·행정예고>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●환경부공고제2020-722호

「2020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」(환경부고시, 제2019-266호, 2020. 1. 1)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0일

환 경 부 장 관

「2020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」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코로나19 영향으로 회수·재활용의무 이행 실태가 불가피하게 급격히 악화된 품목(종이팩, PET 단일무색)에 대해 재활용의무율 조정 필요

### 2. 주요 개정사항

가. (종이팩)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회수량이 급감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'20년도 재활용의무율(30.3%)을 22.8%로 인하(7.5%p↓)

최근 3년 재활용률				'20년도 예상 재활용률(B)	차이 (C=A-B)	'20년도 의무율	
'17년도	'18년도	'19년도	평균(A)			현행 (D)	조정안 (E=D-C)
22.5%	22.3%	21.0%	21.9%	14.4%	7.5%p↓	30.3%	22.8%

나. (PET 단일무색)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PET병 재생원료 재고 적체 여건을 고려, '20년도 재활용의무율(80.0%)을 71.0%로 인하(9.0%p↓)

최근 3년 재활용률				'20년도 예상 재활용률(B)	차이 (C=A-B)	'20년도 의무율	
'17년도	'18년도	'19년도	평균(A)			현행 (D)	조정안 (E=D-C)
79.0%	78.2%	75.1%	77.4%	68.4%	9.0%p↓	80.0%	71.0%

### 3. 의견제출

「2020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」 고시 일부개정안(붙임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자원재활용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(전화: 044-201-7386, 7387 FAX : 044-201-7394, 전자우편 : kyungnoh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
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, 법령 ⇒ 행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● 환경부공고제2020-723호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0일

환 경 부 장 관

###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,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,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, 별표 1, 별표 4의3)

#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폐자원관리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